## 2019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종부	900118-*****

###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고지금액)	소득월액(	[납부금액)
결길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169,070	14,380	0	0
02월	169,070	14,380	0	0
03월	169,070	14,380	0	0
04월	168,200	14,310	0	0
05월	168,200	14,310	0	0
06월	-147,510	-12,560	0	0
07월	135,110	11,490	0	0
08월	135,110	11,490	0	0
09월	135,110	11,490	0	0
10월	135,110	11,490	0	0
11월	135,110	11,490	0	0
12월	135,110	11,490	0	0
연말정산	-6,870	-480		
합계	1,499,890	127,660	0	0
총합계				1,627,55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종부	900118-*****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210,600	0
02월	210,600	0
03월	210,600	0
04월	210,600	0
05월	210,600	0
06월	0	0
07월	188,230	0
08월	188,230	0
09월	188,230	0
10월	188,230	0
11월	188,230	0
12월	188,23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	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2,182,380	0
	총합계	2,182,38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종부	900118-****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	l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수익자)	종피보험자2	(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자 식회사 (영업	대해상보험 주 업소)	(무)Chubb New 3대 험(	대질병보장보			
보장성	116-84-00	0***	CAN401003	16855	900118-*****	박종부	156,420
	에이스아메리칸화자 식회사 (영업	대해상보험 주 업소)	(무)Chubb 치아안 /만	심보험 (Q형			
보장성	116-84-00	0***	LTD844000	8681	900118-****	박종부	462,360
	흥국화재해상보	.험(주)	0704다모아가족	<sup>두</sup> 사랑보험			
보장성	102-81-07	7***	4070037214	40000	900118-****	박종부	381,356
	우정사업년	본부	건강만기	7			
보장성	101-83-02	2***	42092590	260	900118-****	박종부	314,40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종부	900118-*****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	<b>本</b>	주피보험	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수익자)	종피보험자2(	(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미래에셋생명보	험(주)	연금전환되는변액종	통신II(무)1601			
보장성	305-81-08	3***	80037249	922	900118-****	박종부	3,112,800
	인별합계금액						4,427,336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종부	900118-*****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8-96-06***	회***	일반	31,800
**8-32-16***	롯***	일반	7,500
**7-02-63***	여****	일반	25,000
**7-16-07***	메***	일반	13,000
**5-18-00***	뉴****	일반	8,950
**3-92-00***	<u>*</u> *****	일반	146,600
**4-38-63***	부*****	일반	49,9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282,75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82,75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5-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종부	900118-*****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385,756	0	210,430	0	596,186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 주 )	일반	55,300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328,956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5,200
신용카드	101-86-61***	( 주 ) KB국민카드	일반	1,500
신용카드	101-86-61***	( 주 ) KB국민카드	대중교통	205,230
인별합계금액			596,186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한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박급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00121-2322778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종부	900118-*****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9,023,877	148,000	710,500	14,230	9,896,607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509,510
직불카드 등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171,327
직불카드 등	101-86-61***	( 주 ) KB국민카드	일반	8,289,590
직불카드 등	101-86-61***	( 주 ) KB국민카드	전통시장	148,000
직불카드 등	101-86-61***	( 주 ) KB국민카드	대중교통	710,500
직불카드 등	101-86-61***	( 주 ) KB국민카드	도서공연등	14,230
직불카드 등	201-81-68***	(주)국민은행	일반	53,450
인별합	계금액	9,896,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시 사용내역과 가스하자로가 다른 경우 사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사용카드 등 사용근에 할어서'를 재받근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종부	900118-*****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4,175,856	16,146,800	0	144,100	20,466,756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1,085,540	267,000	317,500	145,00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072,074	129,900	88,000	65,540	4,175,856
		711,600	63,342	109,970	120,39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전통시장거래	367,000	1,257,000	0	1,507,500	
		0	2,438,000	1,929,600	1,328,000	16,146,800
		2,564,800	1,392,000	2,720,900	642,00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0	0	0	0	
		0	0	0	63,000	144,100
		81,10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연금저축]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종부	900118-****

■ 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연도 납입금액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순납입금액
계좌번호		납입금액	인출금액	
삼성생명보험 ( 주 )	104-81-26***	1 200 000	0	1 200 000
00007435258110021		1,200,000	0	1,200,000
순납입금액 합계				1,200,000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9-

- 1.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
-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 4.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